

윤리규범

[2023.01.01]

(주)인성

전문

(주)인성은 고유의 인재상인 '**6E의 Ethic(윤리)**'을 중심으로 판단 및 실천의 기준이 되는 "윤리규범"을 제정하며, 이의 실천을 통하여 고객, 주주, 협력사,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아래의 윤리규범은 (주)인성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그리고 (주)인성의 윤리규범 담당 부서 인사팀은 모든 임직원이 이 규범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수하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모든 임직원은 이 규범을 마땅히 준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1장 고객(거래처)

(주)인성은 모든 고객(거래처)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 및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여 고객으로부터 '**신뢰받고 선택받는 회사**'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1-1. 고객의 입장을 파악하여 고객의 만족을 위해 노력한다.

- 1)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며,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한다. 고객의 정당한 요구는 신속 정확하게 처리한다.
- 2) 고객에게는 항상 정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대한다.

1-2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려 노력한다.

- 1) 제품공급, 기술지원, 고객불만 등에 대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며,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와 처리방안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이해를 구한다.
- 2) 고객을 속이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1-3. 고객의 정보와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 1) 고객의 재산, 지적재산권, 영업 비밀 등은 회사 자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로써 관리·보호하고,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담보제공,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는다.
- 2) 고객에 대한 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않는다.

제2장 주주

(주)인성은 합리적인 사업활동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명함을 유지하여 '주주를 존중하는 회사'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2-1. 성실한 경영으로 회사가치를 극대화 하고자 노력한다.

- 1) 임직원은 경영성과 창출 및 회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 한다.
- 2) 창의적인 사고와 끊임없는 혁신으로 회사가 변화하는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2. 기업경영에 관련된 법령 준수 및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 1) 회사 경영은 관계법령을 준수함은 물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 2) 회사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과 재무상태는 관계법령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작성·유지한다.

2-3. 소액주주의 권리를 존중한다.

제3장 임직원

(주)인성은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긍지와 보람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일하고 싶은 회사’**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3-1. 윤리적 가치관 확립으로 회사와 개인의 발전을 함께 추구한다.

- 1) 각 임직원은 인성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써 생활한다.
- 2) 자신의 지위 또는 직책을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 3) 근무 시간 중 사적인 용무를 위해 업무를 해태해서는 안 되며, 사업장내에서 음주, 도박, 사행행위 등 불건전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4) 정당한 권리 없이 제3자 소유의 S/W를 무단 복제·사용하지 않는다.

3-2. 능동적인 자세와 창조적인 사고로 회사발전에 공헌한다.

- 1) 각 임직원은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고 회사 경영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완수한다.
- 2) 동료 및 관련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성과와 효율을 최대한 높인다.
- 3)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가 되도록 항상 자기개발에 힘쓴다.

3-3.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한다.

- 1) 회사는 성별, 학력, 나이, 종교, 출신지역 등에 따라 직원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임직원을 대우한다.
- 2) 각 임직원은 혈연, 지연, 학연 등을 이용한 파벌을 조성하여 회사 조직의 화합과 단결을 해치지 않는다.
- 3) 회사, 임원, 상급자는 소속 직원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고 보상함으로써 업무성취 동기를 높인다.

3-4-1. 임직원은 회사 재산의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 1) 각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 비품, 자재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2) 업무수행 중 취득하는 회사, 고객, 협력업체 등에 관한 일체의 정보는 상사 및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3) 각 임직원은 컴퓨터 및 각종 기기의 사용에 필요한 ID와 비밀번호 관리를 철저히 하여 회사의 정보 유출 방지에 최대한 노력한다.

3-4-2. 임직원간 금전거래, 청탁, 선물 제공 등을 하지 않는다.

- 1) 직원 상호 간 금전 대차, 연대보증 및 상호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2) 직원 상호 간 업무상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청탁을 대가로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수혜 하지 않는다.
- 3) 직원 상호 간 선물 제공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4) 직원 상호 간 경조사 부조는 자발적으로 하며 사회통념에 따른다.

3-4-3. 무례한 언행, 성희롱 등으로 직장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다.

- 1) 모든 임직원은 저속한 언행이나 옷차림으로 회사의 품위를 해쳐서는 안 되며, 다른 동료나 임직원을 비방, 중상하여 조직의 단합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
- 2) 회사는 연간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각 임직원은 상호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밝은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한다.

3-5. 모든 임직원은 각자 사회적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음을 인식하고, 회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경영 역량을 개발한다.

- 1) 임직원은 회사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 및 사회가 함께 발전해야 함을 목표로 삼고, 투명한 경영과 새로운 가치 창출로 인류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 2) 임직원은 기업경영에 관해 국제적으로 선도되는 혁신적인 지식과 경험을 조기에 습득하여 회사 경영에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 3) 기업 활동이 행해지는 곳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고 현지인과의 갈등을 최대한 방지한다.

3-6. 회사는 '통합된 다양성'이 마음껏 발휘 될 수 있도록 개개인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고 모든 임직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경영**에 힘쓴다.

- 1)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인권침해를 하지 않으며,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로 '통합된 다양성' 을 통해 모든 임직원이 조직의 하나 된 목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회사는 임직원 본인 및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건강, 교육, 문화, 환경, 복지 분야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임직원의 자유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강요, 구속 또는 그 밖의 강제 노동 등은 어떠한 형태로도 금지된다. 회사는 노동을 강제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경제적 상황, 채무관계 등에 기하여 정신적 압박을 하지 않는다

4) 회사는 어떠한 형태로도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령 및 아동노동에 관한 국제 협약으로 정해진 고용 최저연령을 준수한다.

5)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의 고용이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최소 연령 요구사항을 확인한다. 고용 시 근로조건에 대한 보호 조치를 명시하고, 위험성이 높은 업무에 투입하여서는 안 되며, 노동으로 인해 교육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6)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육체적 강압, 폭언, 불합리한 제한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4장 협력회사

(주)인성은 협력회사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함께하고 싶은 회사' 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4-1. 공정한 거래

회사는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 1) 회사는 자격을 구비한 신규업체가 회사와 거래를 시작하고자 원하는 때에는 공평한 기회를 부여한다.
- 2) 협력업체 등록과 계약체결은 회사가 사전에 수립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결정한다.
- 3) 모든 임직원은 협력업체가 회사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협조한다.

4-2. 부당행위 금지

회사는 선물을 포함한 뇌물수수, 횡령 등 부패행위를 정책으로 금지하고, 반부패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및 감시하려 노력한다.

- 1) 각 임직원은 회사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협력업체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접대, 편의를 제공받아서 안 된다. 다만,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일 때는 예외로 하나, 그 범위를 벗어나거나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상사를 경유하여 인사팀에 신고한다.
- 2) 불가피하게 금품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인사팀에서 정한 금품 등 수수 처리 신고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3) 각 임직원은 경조사를 이유로 고객,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4) 각 임직원은 사적인 목적으로 고객/거래처 및 협력업체와 금전거래 (대차,보증, 담보제공 등)를 하지 않는다.
- 5) 각 임직원은 사적인 영리를 위해 고객 및 협력업체를 이용(동업, 투자, 알선 등)하지 않는다.

** 협력사 윤리규범 관리사항

(주)인성의 협력회사 윤리규범은 협력회사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직원의 인권을 존중하며,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윤리적 기업을 운영하도록 (주)인성이 협력회사에 요구하는 바를 제시한다.

인권 및 노동	자발적 근로(강제노동 금지), 아동/유소년, 임금, 인도적 대우 및 차별금지
윤리	청렴성, 정보공개, 신원보호, 지적재산권보호, 윤리서약서 작성
보건 및 안전	산업안전, 위생, 비상사태 대비, 유해인자 노출관리, 설비안전, 안전보건교육

4-3 협력회사 인권 및 노동

1) 자발적 근로(강제노동 금지)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 노예, 인신매매, 비자발적 죄수노동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2) 아동 고용 금지 및 유소년 근로자 권리

협력회사는 아동을 고용해서는 안되며, 만 18 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안전보건 상 위험 한 공정 또는 연장 야간근로에 투입하지 않는다.

3) 임금

협력회사는 법정 최저임금 기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4) 인도적 대우 및 차별금지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육체적 강압, 폭언, 불합리한 제한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가 없어야 한다. 또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지향, 성 정체성, 출신 민족, 장애, 임신, 종교, 정치성향, 노조 가입, 국적, 결혼 여부에 근거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4-4 협력회사 기업윤리 준수

1) 반부패 준수/부당이익 금지

협력회사는 선물을 포함한 뇌물수수, 횡령 등 부패행위를 정책으로 금지하고, 반부패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및 감시한다.

2) 지적재산권 보호 및 공정거래 기준 준수

협력회사는 모든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기술/노하우의 이전 시 해당 권리를 보호한다. 또한 공정거래(담합 금지) 관련 규제 및 기준을 준수한다.

3) 개인정보 보호

협력회사는 모든 이해관계자(협력회사, 고객, 소비자, 임직원 포함)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노력한다.

4-5 안전한 작업환경

1) 산업안전

협력회사는 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가능성을 파악하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안전한 공정의 설계, 기술적/행정적 통제, 예방정비, 작업절차서 내 안전측면 반영, 지속적인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하고,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며 대상 근로자는 반드시 착용하도록 관리 감독한다.

2) 비상사태 대비

협력회사는 발생 가능성이 높고 우선대응이 필요한 비상사태를 정의하고 사태 별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3) 작업환경 내 유해인자 노출관리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노출될 수 있는 화학적/생물학적/물리적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정기적인 작업환경 측정(소음, 진동, 실내 공기질 등)을 통하여 그 영향을 파악한다.

4) 설비안전

협력회사는 모든 위험설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법규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물리적인 안전장치 설치하고, 해당 장치에 대한 예방정비를 실시한다.

5) 안전보건 교육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보건 정보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거나,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비치해야 한다. 안전보건 교육은 작업 시작 전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가 안전상의 문제를 자유롭게 제기/공유할 수 있도록 신고 및 의사소통 창구를 마련한다.

제5장 사회

(주)인성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고 환경보호 및 사회공헌에 앞장서며 '**사회에 공헌하는 회사**'가 되기위해 노력한다.

5-1. 임직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해 사회적 부를 창출하려 노력한다.

- 1) 회사가 기업활동을 하는 곳에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고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 2) 회사는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납세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각 임직원은 사회적 약자와 불우한 이웃을 위해 적극 봉사한다.
- 3)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4) 회사는 자유경쟁시장 질서를 존중하며 선의의 경쟁을 추구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한다.

5-2.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 1) 회사는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후원하지 않는다.
- 2) 각 임직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원하도록 다른 임직원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목적으로 회사의 신용이나 소유 자산을 이용하지 않는다.

5-3. 환경보호를 위해 적극 앞장 서고자 노력한다.

- 1) 회사의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이 파괴, 오염, 훼손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 환경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한다.
- 2) 각 임직원은 사업장 주변은 물론 후손에게 물려줄 우리의 자연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 3) 기업활동에 필요한 원자재 및 물품은 친환경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각 임직원은 자원 절약하는 습관을 생활화 한다.

본 지침은 UN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UN 아동권리협약,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지침과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령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따릅니다.